KOSHA GUIDE

C - 08 - 2015

〈표 1〉 작업발판으로서 목재의 허용응력

허용응력도	압축	인장 또는 휨	전단 (2.FD.)
목재의 종류	(MPa)	(MPa)	(MPa)
적송, 흑송, 회목	12.0	13.5	1.05
삼송, 전나무, 가문비나무	9.0	10.5	0.75

4.2 강재 작업발판

강재 작업발판은 작업대, 통로용 작업발판 및 작업계단으로 구분되며 작업자의 통로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발판이다.

4.2.1 작업대

작업대는 〈그림2〉와 같이 바닥재, 수평재, 보재 및 걸침고리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.

- (1) 작업대는 바닥재를 수평재와 보재에 용접하거나, 절판가공 등에 의하여 일 체화된 바닥재 및 수평재에 보재를 용접한 것이어야 한다.
- (2) 걸침고리 중심 간의 긴 쪽 방향의 길이는 185㎝이하 이어야 한다.
- (3) 바닥재의 폭은 24cm 이상 이어야 한다.
- (4) 2개 이상의 바닥재를 평행으로 설치할 경우에 바닥재간의 간격은 3cm 이하 이어야 한다.
- (5) 걸침고리는 수평재 또는 보재에 용접 또는 리벳 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.
- (6) 바닥재의 바닥판(디딤판)에는 미끄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7) 작업대는 재료가 놓여 있더라도 통행을 위하여 최소 20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